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5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박상웅 · 신동욱 · 조은희

윤한홍 · 고동진 · 최보윤

정동만 · 박정하 · 박덕흠

김상훈 · 송석준 · 김성원

김미애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

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생 략)</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경우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p>
<p>③ · ④ (생 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